

#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46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2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 교명제정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에서 성별 균형 내용 신설
- 2024. 9. 1.자 고등학교 1개교(휘경공업고등학교) 교명 변경
- 2024. 9. 1.자 유치원 1개원(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 2. 주요 내용

가. 제5조(위원회의 구성) (안 본문)

조항 개정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신설>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나. 고등학교 명칭 (안 별표 3)

교명 변경: 1개교

- 휘경공업고등학교 → 서울반도체고등학교

다. 유치원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7)

신설: 1개원

- 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중구 퇴계로22길 17)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 6

1)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별첨 2)

다. 협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1

○ 입법예고(2024. 4. 11. ~ 2024. 5. 1.) 결과: 의견 없음(별첨 3)

○ 교육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불수용(별첨 4)

○ 학생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별첨 5)

##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으로 한다.

별표 3 명칭란 중 “휘경공업고등학교” 를 “서울반도체고등학교” 로 한다.

구 분	교육지원청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본청	동부	동대문구	서울반도체고등학교	동대문구 겸재로 21

별표 7 구분란 중 “중부교육지원청(13교)” 를 “중부교육지원청(14교)” 로, “중구(4교)” 를 “중구(5교)” 로 하고, 중부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광희초등학교병설유치원” 란 다음에 “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란 을, 위치란 중 “중구 다산로 269(신당동)” 다음에 “중구 퇴계로 22길 17” 을 신설한다.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중부교육지원청	중구	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중구 퇴계로22길 17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휘경공업고등학교의 명칭 변경은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 직업교육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 직업교육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u>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p>																												
<p>[별표 3]                      고등학교 명칭 (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69 1122 783 1458"> <thead> <tr> <th>구분</th> <th>교육지원청</th> <th>자치구명</th> <th>명칭</th> <th>위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본청 (115교)</td> <td rowspan="3">동부 (8교)</td> <td rowspan="3">동대문구 (3교)</td> <td>&lt;생략&gt;</td> <td></td> </tr> <tr> <td>휘경공업고등학교</td> <td>동대문구 검재로 21</td> </tr> <tr> <td>&lt;생략&gt;</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교육지원청	자치구명	명칭	위치	본청 (115교)	동부 (8교)	동대문구 (3교)	<생략>		휘경공업고등학교	동대문구 검재로 21	<생략>		<p>[별표 3]                      고등학교 명칭(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818 1122 1433 1458"> <thead> <tr> <th>구분</th> <th>교육지원청</th> <th>자치구명</th> <th>명칭</th> <th>위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본청 (115교)</td> <td rowspan="3">동부 (8교)</td> <td rowspan="3">동대문구 (3교)</td> <td>&lt;현행과 같음&gt;</td> <td></td> </tr> <tr> <td>서울반도체고등학교</td> <td>동대문구 검재로 21</td> </tr> <tr> <td>&lt;현행과 같음&gt;</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교육지원청	자치구명	명칭	위치	본청 (115교)	동부 (8교)	동대문구 (3교)	<현행과 같음>		서울반도체고등학교	동대문구 검재로 21	<현행과 같음>	
구분	교육지원청	자치구명	명칭	위치																									
본청 (115교)	동부 (8교)	동대문구 (3교)	<생략>																										
			휘경공업고등학교	동대문구 검재로 21																									
			<생략>																										
구분	교육지원청	자치구명	명칭	위치																									
본청 (115교)	동부 (8교)	동대문구 (3교)	<현행과 같음>																										
			서울반도체고등학교	동대문구 검재로 21																									
			<현행과 같음>																										
<p>[별표 7]                      유치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69 1671 783 1977"> <thead> <tr> <th>구분</th> <th>자치구명</th> <th>명칭</th> <th>위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중부 교육지원청 (13교)</td> <td rowspan="3">중구 (4교)</td> <td>&lt;생략&gt;</td> <td></td> </tr> <tr> <td>서울광희초등학교 병설유치원</td> <td>중구 다산로 269 (신당동)</td> </tr> <tr> <td>&lt;신설&gt;</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치	중부 교육지원청 (13교)	중구 (4교)	<생략>		서울광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구 다산로 269 (신당동)	<신설>		<p>[별표 7]                      유치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818 1671 1433 1977"> <thead> <tr> <th>구분</th> <th>자치구명</th> <th>명칭</th> <th>위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중부 교육지원청 (14교)</td> <td rowspan="3">중구 (5교)</td> <td>&lt;현행과 같음&gt;</td> <td></td> </tr> <tr> <td>서울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td> <td>중구 퇴계로 22길 17</td> </tr> <tr> <td>&lt;신설&gt;</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치	중부 교육지원청 (14교)	중구 (5교)	<현행과 같음>		서울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구 퇴계로 22길 17	<신설>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치																										
중부 교육지원청 (13교)	중구 (4교)	<생략>																											
		서울광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구 다산로 269 (신당동)																										
		<신설>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치																										
중부 교육지원청 (14교)	중구 (5교)	<현행과 같음>																											
		서울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구 퇴계로 22길 17																										
		<신설>																											

## 【별첨 2】

[별지 제1호 서식]

###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교명 변경 및 학교 신설로 인한 현판 등 제작·교체 비용 발생함.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함.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20.>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학교의 기설 교명 변경 및 신설 교명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판 등 제작·교체 비용이 발생하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기관 자체 예산으로 비용의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 시립학교 설치조례 개정 절차 전 학교 신설 등을 위한 소요금액 예산심의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 금액은 [참고] 문서 참조

#### 4. 작성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주무관 김지빈(02-2282-8358)

**【별첨 2-1】 학교 신설 등을 위한 소요금액 (예산심의 확정액)**

(단위: 천원)

연번	학교급	학교명	건설비	토지매입비	기타 (운영비 등)	합계	비고
1	유	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9,612,254			9,612,254	신설

【별첨 3】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4조 별지 제5호 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의견 없음  (이하 생략)	

【별첨 4】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서울교육008		
정책명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학교지원과	
	담당자명	김지빈	전화번호 02-6973-985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4월 1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학교지원과)	조례안 [별표] 상 2024. 9. 1.자 본문 개정(교명제정심의위원회 성별 균형 내용 신설), 교명 변경 (휘경공업고등학교), 학교신설(병설유치원 1개원) 반영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1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행정 국장,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행정 국장,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권고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4년 5월 18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서울특별시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여인진/02-399-9546)			
학교지원과장 귀하			

【별첨 4-1】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4A서울교육008		
정책명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학교지원과	
	담당자명	김지빈	전화번호 02-2282-8358

###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권고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행정국장,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행정국장,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는 이미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이를 단순히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체계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 개정안에는 위원 위촉 시 이미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반영하고자 함.

2024년 05월 01일

학교지원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별첨 5】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담당자	직급	주무관	성명	김지빈 (02-2282-8358)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마한열(위원장), 김상일, 이민철, 이정현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제5조, 별표3 별표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조례안은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교명제정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에서 성별 균형 내용을 신설하고, 2024.9.1.자 고등학교 교명 변경 및 유치원 신설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임</li> <li>- 이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li> </ul>					원안동의

【별첨 6】

관계법규

■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개정 2021. 9. 24.>

② (생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타법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4. (생략)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 17. (생략)